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차례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3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5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6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7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9
가. 개요 9
나. 추진 절차9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9
2) 분석평가서 작성10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10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11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14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14
(1) 선정 기준 14
(2) 선정방식 및 절차14
(3) 체크리스트 작성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15
2) 분석평가서 작성18
(1) 분석평가 지표18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19



Ω	ᅰ裿	세 미취 서비서창비서전기	2.2
Ζ.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3
		개요	33
	나.	추진 절차	33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33
		2) 분석평가서 작성	34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34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34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36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36
		(1) 선정 기준	36
		(2) 선정방식 및 절차	36
		(3) 체크리스트 작성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37
		2) 분석평가서 작성	40
		(1) 분석평가 지표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3.	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4
3.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4 54
3.	가.	개요	54
3.	가.	개요 ····································	54 54
3.	가.	개요 ····································	545454
3.	가.	개요 ····································	54545455
3.	가.	개요	5454545555
3.	가. 나.	개요	5454545555
3.	가. 나.	개요	5454545555
3.	가. 나.	개요	54545455555659
3.	가. 나.	개요	54545455555659
3.	가. 나.	개요	5454545556595959
3.	가. 나.	개요	5454545556595959
3.	가. 나.	개요	54 54 55 55 56 59 59 59 59 60
3.	가. 나.	개요	54 54 55 55 56 59 59 59 59 60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8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83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84
3. 정책 개선 85
가. 정책개선의 권고 85
나. 정책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85
다. 정책개선 결과 제출85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89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91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91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2. 분석평가책임관 93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95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93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94
가. 평가기관의 기능 94
나. 평가기관의 운영 95
다. 평가기관의 지정95
라. 평가기관의 지정(재지정) 절차 96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106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108
V. 참고자료 ····································
1. 관계 법령 11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13
나.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항)121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123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126
마. 통계법(관련 조항) 127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사례 129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 영 제2조제4항)

II

 \coprod

IV

V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 ('05) 53개기관/85개과제 → ('11) 292개기관/2,954개과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12)
-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정책
-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	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제·개정 법령안 (중앙 부처) 명가서 작성·제출 (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보령 • 중앙부처의 제·개정 법령안에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 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분석평가 검토·협의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령			 분석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중장기 기본 계획 (중앙부처· 지자체)	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특정평가 추진시 기본계획 수립	 비전·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검토·협의(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토 및 추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사업	성과관리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 제출 (중앙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부처)		 분석평가서 검토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H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 ·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성별영향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분석평가에서 제외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 결과 통보 	 대상정책 선정 및 선정결과 해당 기관 통보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분석평가결과 종합 ●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 ● 제출(익년도 2월말)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II

IV

V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1)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작성·제출(영 제3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2)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7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П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coprod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당해 기관 법제 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안 입안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영 제2조제1항·제2항)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영 제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법안 입안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

2) 분석평가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하는 법령 중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분석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령안 부처 협의 시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성평등에 미칠 영향이 없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안함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까지 분석 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책임관은 자체 수행이 어려운 법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검토 요청 가능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처 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각 기관에 통보하며,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 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당해 기관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통보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결과를 제·개정 법령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영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결과를 제·개정 자치 법규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영 제3조제3항)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

단계 해당 기관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컨설팅 · 교육 지위 법안 입안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 가족부에 제출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반영 해당 기관에 검토의견 통보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 반영 · 협의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분석평가서 컨설팅 • 교육 지원 부처협의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 작성 가족부에 제출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해당 기관에 부처협의단계 분석평가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 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 검토 및 반영 결과를 법제처 심사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일까지 검토의견 통보 통보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분석평가 종합한 종합분석보고서를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결과 종합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후 국회 제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단계

해당 부서

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ㆍ제출

법안 입안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여성가족부) 컨설팅·교육 지원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 반영ㆍ협의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 · 제출

자치법규안 심사 전까지 분석평가서를 작성 하여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여성가족부)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분석평가

결과 종합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자치법규안 심사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자체 수행이 어려운 법규 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분석평가 요청 가능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여성가족부) 기관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한 종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 다만 기관 우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
 - ※ 성평등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등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

세부 평가항목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예) 직제, 기록물 등

제외 법령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분석평가 제외 법령

- 기관운영 관련 법령(기구·직제·기록물·물품 등 관련 법령)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예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2) 선정방식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법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제외 법령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실시

 \coprod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	청령() 총리령() 부렁() :	조례() 규칙()
소관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입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일정 (예정)	입법예고	~	(일간)
(41/8)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 외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7 법 정o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 성평등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등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

💮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법령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 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주요 내용 기재

 \coprod

💮 작성 사례

기획재정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구분	제정() 개정(〇)		
형식	법률() 대통	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장	부서명: 인사과 인사제도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02-2150-0000	
부서	담당자	부서명: 인사과 인사제도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02-2150-0000	
입법	관계기관 협의	2011.7.11 ~ 2011.7.21(10일간)	
일정 (예정)	입법예고	2011.7.22 ~ 2012.8.11(20일간)	
(-11.9)	법제처 심사*	2012.8.17 ~ 2012.9.16(30일간)	
붙임 자료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 조문 비교 표 포함)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X S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 예 □ 아니오	국유재산 관리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 인력 증진 등 기획 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선·보완
박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 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 아니오	

-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 성평등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등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의 3개 평가항목에 대해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I. 성별 구분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Ⅱ.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Ⅲ. 성별 특성 반영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coprod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I.개 요

□ 제·개정 목적

 \circ

0

□ 제·개정 주요 내용

0

0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Ⅱ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0

- 2. 성별 구분 조항 필요성
- □ <분석 근거>

 \circ

0

□ <해당 조항>

 \circ

-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0

0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III

2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 0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 <분석 근거>
 - \circ
 - \circ
- □ <해당 조항>
 - 0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 0
 - 0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3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0

- 8. 자격 · 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 <분석 근거>

0

0

□ <해당 조항>

 \circ

-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0

0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Ш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제·개정되는 조항이 9개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하고 분석 근거란에 그 근거도 함께 기재
 -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
- 해당 여부란에 해당 여부를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란에 관련 조항을 모두 기재

I. 개요

- 🧼 작성 요령
- □ 제·개정 목적
-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 □ 주요 제·개정 내용
-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
- 🎒 작성 사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I. 개요

- □ 제·개정 목적
 - 현행법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는 기본규정이 있으나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등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어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자 함
- □ 주요 제·개정 내용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 제3항)
 -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구분

🥶 작성 요령

-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 성별 구분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성별구분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
 -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성별 구분 조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제·개정하는 법령 조항에 반영

🧶 작성 사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团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성별 구분 조항 필요성
- □ <분석 근거>
 - 여성수용자의 모성을 우대하여 배려하는 반면 남성수용자의 부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휴한
 - 수용자의 자녀접견은 수용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용자만이 아닌 남성수용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어야 함
- □ <해당 조항>
 - 제50조제4항
-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 제50조는 여성수용자의 처우를 정한 조항이므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미성년 자녀와의 개방접견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제50조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 제00조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2 성별 고정관념

- 🧶 작성 요령
 -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 ** 예시 :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이 있을 경우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제·개정하는 법령 조항에 반영

🧶 작성 사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 별표 2(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장해급별

장해급별	보험금액	신체장애
7급	80만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12급	20만원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
14급	8만원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 <분석 근거>
 -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보험금액 설정 시 여성의 외모 등급을 상위로 정한 것은 사회생활 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고통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임
- □ <해당 조항>
 - 별표 2(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장해급별
-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 외모의 흉터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남녀의 외모 등급 차이를 삭제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 7급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 12급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 ○ 14급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 7급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12급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3 성별 특성 반영

- 🧶 작성 요령
 -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 결과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격·요건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자격·요건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자격· 요건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
 -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이 없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 예시: 사회보험제도에서 최소기여기간을 늘려 급여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법령에 규정하는 조치가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
 - ※ 예시 : 건강검진 또는 진료에 대한 규정에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
 - 연령, 종교, 인종,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준, 신체적 조건 등 차이 또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언급한 규정의 경우 성별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
 -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 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자격·요건 조항의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 작성 사례(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 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 <분석 근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적용범위이므로 무급 가족종사자(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가족 등)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지 못함
 - 2010년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이 85.5%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옴
- □ <해당 조항>
 - 제25조제2항
-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 자영업자와 공동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도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 제25조제2항제2호 개정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제25조 ②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작성 사례(2)

방송매체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법률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 <해당 조항>
 - 제29조(여론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등) ③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법률학·경제학·통계학, 그 밖에 방송·언론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방송·언론 등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 <분석 근거>
 - 법률안에서 정한 요건은 성별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음
 - 또한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증진이라는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도록 균등한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 조정 필요
- □ <해당 조항>
- 제29조제3항
-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 <분석 근거>
- 위원 자격요건을 현행 유사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요건을 참고하여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아

○ 제29조 ③ 1. 방송학·언론학·법률학·경 제학·통계학, 그 밖에 방송·언론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 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개선인

○ 제29조 ③ 1. 방송학·언론학·법률학·경제학·통계학, 그 밖에 방송·언론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1항)
 - 각 기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영 제3조제1항)
 - ※ 필요시 세부과제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법률 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의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기본계획 수립안 마련 시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영 제2조 제2항)
 -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가표준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수급 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 그 외 모든 계획의 체크리스트는 분석평가서와 함께 추후 제출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회신(영 제2조제3항)

2) 분석평가서 작성

○ 기본계획의 주관부처는 기본계획 수립안 마련 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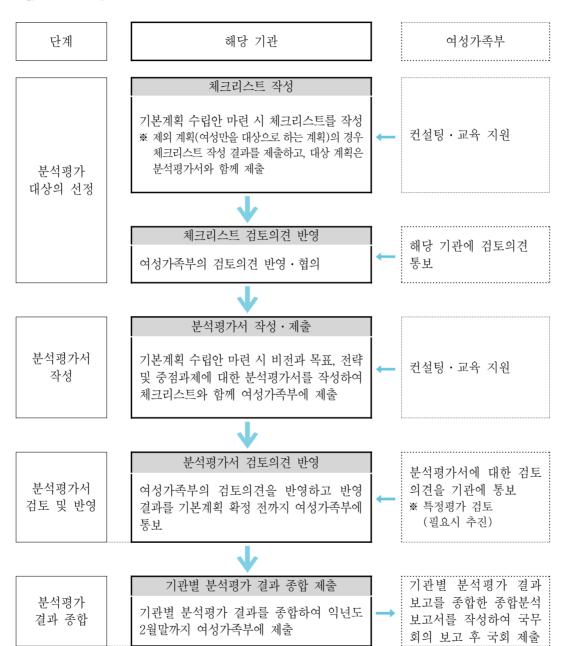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 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를 기본계획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
 -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각 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 각 기관은 분석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영 제3조제3항)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법률상 수립근거가 있는 모든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이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

세부 평가항목

제외 계획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 ※ 분석평가 제외 계획(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 예시 :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등

(2) 선정방식 및 절차

- 각 기관은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분석평가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계획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제외 계획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추진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근거 법령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부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소관	소관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부서 관계기관	관계기관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계획	관계기관 협의		~	(일간)
수립 일정 (예정)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1. 계획(안) 2. 관련 연구결:	과물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계획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등	□예 □아니오	

🧼 작성 요령

-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제외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 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 계획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계획 내용 기재

🥚 작성 사례

보건복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2)차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주관기관 및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02-2023-0000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〇〇/02-2110-0000
		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ㅇㅇ/02-2100-0000
부서	관계기관	기관명: 여성가족부
	선계기선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02-2075-0000
		기관명: 농림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최〇〇/02-500-0000
		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오○○/02-2156-0000
계획	관계기관 협의	2010.5 ~ 2010.9 (150일간)
수립 일정	계획안 마련	2010.5 ~ 2010.9 (150일간)
(예정)	위원회 상정 및 의결	2010.9.20 ~ 2010.9.30 (10일간)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붙임	2. 관련 연구결	과물 : ①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2009,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②저출산·고령시	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조사(2009. 보건사회연구원)
	③복지부 장관	주재 민간연구기관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2010.5)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 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 성지원 기본계획 등	□예 ☑ 아니오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4개 평가항목에 대해 9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2. 성별 요구도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Ⅱ. 전략 및 중점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⑤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과제		⑥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⑦ 법령 반영 계획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⑧ 예산 반영 계획	
		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는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coprod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계획명 :
- I.개 요
 - □ 비전과 목표
 - ※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 □ 전략 및 중점과제
 - ※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 Ⅱ. 비전과 목표
 - Ⅱ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있음 □없음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 <분석 근거>

 \circ

□ <해당 계획 개선안>

 \circ

Ⅲ. 전략 및 중점과제

Ⅱ 성별 요구도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계획 개선안>

0

-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계획 개선안>

-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계획 개선안>

0

III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	겨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 □ <해당 계획 개선안>

0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명	丏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0

□ <해당 계획 개선안>

0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8. 예산 반영 계획	
9.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coprod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 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작성

I. 개요

- 🧼 작성 요령
- □ 비전과 목표
- 해당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기술
- □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 기술
- 🌼 작성 사례

I . 개요

- □ 비전과 목표
- 비전 :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목표 : 20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2016-30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
- □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방향	추진 분야	중점 과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가족 친화 직장환경 조성	
ㅠ디만 완성 조성		가족형성여건조성	
		임신·출산지원확대	
		자녀 양육 비용 지원 확대	

추진방향	추진 분야	중점 과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취약계층아동지원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기반조성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베이비붐 세대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 설계 강화
고령사회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내실화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인빈곤예방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 • 여가문화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촉진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개발 체계 확립
성장동력 확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 개선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0.41 151 . 1100 115	재정분야 제도개선
	그러뒤되기신 이끄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산업 육성	국내외 시장 활성화

V

IV

 \coprod

Ⅱ. 비전과 목표

- Ⅰ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 작성 요령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기본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 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비전 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

🧼 작성 사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미있음 데없음

-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도로, 철도, 항공, 해양 사고 사망자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각종 교통시설의 위험도는 연령, 장애 및 성별에 따라 위험 인지도 및 위험 예방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 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
- □ <해당 계획 개선안>
 - 없음

Ⅲ. 전략 및 중점과제

- □ 성별 요구도
- 🧶 작성 요령
-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로 인해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로 인해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기본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
 -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prod

🧼 작성 사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团있음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团있음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남성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함. 따라서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중점과제 추진 시, 남성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자료: 보건사회연구원, 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 순위 조사)

<출산양육정책 우선순위>

	여성	남성
비용지원	30.1	32.6
출산 • 육아휴직제도	21.8	16.2
근로시간 조정	14.8	13.2
결혼하기 좋은 여건	7.1	9.5
가족중시 직장 환경	6.0	10.4
임신ㆍ출산 지원	6.4	6.2
질 좋은 보육시설	8.3	4.9
취약계층 지원	3.9	4.1
아동청소년 안전	3.3	2.7
아동정책 기반 구축	0.4	0.2
기타	0.1	
계	100%(1,021명)	100%(982명)

- □ <해당 계획 개선안>
- 남성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와 가족생활지원 확대와 관련된 과제 보완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여 연금수급권이 제한적임. 따라서 노후생활보장 중점과제 추진 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여성노인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해당 계획 개선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남성 노인의 평균 수명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해 온 배우자의 수급여건 등 개선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증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의 경우 여성노인(33.9%)이 남성 노인(26.9%)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라 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다르므로, 건강한 노후생활 중점과제 추진 시 이러한 요구 차이 반영 필요
□ <해당 계획 개선안>

○ 건강관리에 있어 성별 질병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 신체에 적합한 운동프로그램 도입

2 성별 형평성

- 🧶 작성 요령
 -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 및 중점과제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반영
 -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
 - ※ 예시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 및 중점과제별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반영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작성 사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团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团없음

5.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분석	근거	>

-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성별로 위험 인지도 및 위험 예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성희롱범죄에 있어서 여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 <해당 계획 개선안>
 - 교통수단 이용 시 성범죄 발생 예방 등을 위한 사업 확대
-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주로 인프라 개선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혜의 성별 형평성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여성들은 아이들을 동반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걷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한 계획수립이 필요
- □ <해당 계획 개선안>
 - 인도를 유모차를 끌 수 있는 넓이로 확장하고 도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여성 및 노약자를 동반한 이용자의 요구 반영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작성 요령

- 7.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8. 예산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9.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작성 사례

9. 사업내용 ·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 맞벌이 가구 지원 관련 보육사업 지침 개정	
8. 예산 반영 계획	○ 영세 사업체,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종사자의 출산 및 육아휴 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제 보완

○ 건강관리에 있어 성별 질병의 차이를 고려한 운동프로그램 도입

○ 남성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와 가정 생활지원 확대와 관련된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분석평가 실시(영 제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안 작성 시 분석평가 실시(영 제2조제1항)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 체크리스트는 분석평가서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추후 제출
 - '12년에는 성과목표와 통합하여 추진 가능하며 과제수는 여성가족부와 협 의하여 조정 가능(최소 '11년 과제수 이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자체사업 대상, 보조사업 제외)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 체크리스트는 분석평가서와 함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추후 제출
 - '12년에는 1부서 1과제로 추진하되, 기관별 전체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최소 '11년 과제수 이상)

2) 분석평가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수립 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중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3월말까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중 선정된 과 제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 기관 분석평가책 임관에게 제출(11월말까지)
 - 시도 분석평가책임관은 소속 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의 분석평가서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12월말까지)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
 -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
 - ** 필요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부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제출

- 4) 분석평가 결과 종합(영 제3조제3항)
-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 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coprod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

단계

해당 기관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컨설팅 • 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수립 시 분석평가서 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성가족 부에 제출(3월말까지) 컨설팅 • 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해당 기관에 검토의견 통보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보고를 종합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 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지방자치단체

단계

해당 부서

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예산 작성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여성가족부)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ㆍ제출

예산작성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 리스트와 함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11월말까지)

- 시도 분석평가책임관은 소속 기관 분석 평가서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1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의견을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분석평가책임관은 필요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별 영향분석평가기관에 의뢰 하여 분석평가서 검토 가능



분석평가 결과 종합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여성가족부) 기관별 분석 평가 결과보고를 종합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

세부 평가항목				
제외 사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인적 대상 사업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대상 사업	 시설설치·개선 사업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2) 선정방식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각 기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대상 사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 추진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소관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부서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단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 외 사 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 술인 육성 등	□예 □아니오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예 □아니오	
2단계	대 상 사 업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예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예 □아니오	

🧶 작성 요령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2단계는 작성 없이 종료
 -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2단계의 해당 여부 작성

🧼 작성 사례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농기계훈련사업		
소관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부서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붙임 자료	• 농기계훈련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단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 인 육성 등	□예 ☑ 아니오	
		□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예 □아니오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확대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 정비기술 및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률 및 정비·수리능력 향상
2단계	대상 사업	□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예 ☑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예 ☑ 아니오	

 \coprod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8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요령 및 사례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사업명 :
- I.개 요
 - □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0
 - □ 추진 근거

0

-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0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Ⅱ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사업 개선안>

0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사업 개선안>

0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 <해당 사업 개선안>

 \circ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	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0

□ <해당 사업 개선안>

 \circ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 <해당 사업 개선안>

0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7. 예산 반영 계획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별 개선안을 작성

I. 개요

- 💮 작성 요령
- □ 사업 목적
- 해당 사업의 목적 기재
- □ 추진 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 □ 주요 사업 내용
 -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 작성 사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I. 개요

- □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 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로 기업 지원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 주요 사업 내용
- 미취업 청년층(만15세~29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정책화경의 성별특성

1 성별 요구도

🧶 작성 요령

-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경제적 위치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 하는 사업에 반영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 도출하여 추진 하는 사업에 반영
 -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작성 사례

농기계 훈련사업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에 차이 발생
-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시범운영 실시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교육대상에 여성농업인(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여성) 추가
-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농기계 교육 시 농가경영 주의 동업자(배우자 등) 교육에 대한 요구 발생
-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기계 교육 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을 독려하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 개설
-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 <분석 근거>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음
- □ <해당 사업 개선안>
- 농기계 사용 숙련도에 따른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도입

 \coprod

2 성별 형평성

🧶 작성 요령

-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를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를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재원배분을 의미
 - ※ 예시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작성 사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	겨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있음	□없음

-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 <분석 근거>
 - 전체 사업 참여자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2010년	2011년
전체	26,390명	15,640명
여성(비율)	10,240명(38.8%)	5,670명(36.3%)
남성(비율)	16,150명(61.2%)	9,970명(63.7%)

○ 본 사업은 남성 참여율이 높은 제조업(44%), 출판업(16.2%)이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임금이 낮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참여가 많음(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참여자		
	전체	여성	남성
합계	30,939명(100.0%)	10,240(33.1%)	20,699(66.9%)
제조업	13,623명(44.0%)	3,011명(22.1%)	10,612명(77.9%)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5,016명(16.2%)	1,832명(36.5%)	3,184명(63.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47명(9.8%)	1,373명(45.1%)	1,674명(54.9%)
도소매업	3,214명(10.4%)	1,290명(40.1%)	1,924명(59.9%)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381명(1.2%)	241명(63.3%)	140명(36.7%)

- □ <해당 사업 개선안>
 - 여성 취업선호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 □ <분석 근거>
 - 본 사업은 예산배분 시 사업 참여자가 해당 기업에서 지급 받는 임금의 50%(최대 80만원)로 배분되지만,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임금이 낮은 업종임
- □ <해당 사업 개선안>
 - 임금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 및 금액 확대

 \coprod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 작성 요령
- 6. 법령(지침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법령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7.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별 개선안을 토대로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작성 사례

농기계 훈련사업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교육대상에 여성농업인(기계화 영농이
계획	가능한 여성) 추가
7. 예산 반영 계획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 농기계 활용의 숙련도에 따라 여성 및 고령자가 많이 활용하 는 농기계 우선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시범운영
반영 계획	○ 농기계 사용 숙련도에 따른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도입

붙임 1 <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통보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기관명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 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075-0000)

귀하

붙임 2 <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정 책 명	,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기관명			
소관부서	부서명			
<u> </u>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 결과				
		년 월 일		
여성가족부 장	관 귀하	기관명		

붙임 3

<법령·계획·사업의 종합 결과 보고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결과 보고					
관리번호*					
	기관	경			
소관부서		부서명			
立ゼナベ	작성자	성명			
	ব	· · · · · · · · · · · · · ·			
붙임자료	1. 법령·계획·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목록 및 체크리스트(전체) 2. 법령·계획·사업별 분석평가서 작성 목록 및 분석평가서(전체)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건수)				
			법령	계획	사업
	1. 전체		※ 제·개정 법령 수	※ 기본계획 수립 수	 ※ (중앙)성과관리시행 계획 관리과제 수 (지자체)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 사업 수
Ι.		원안동의			
분석평가 추진	2. 분석평가	개선의견			
현황(총괄)		반영결과			
	 □ 총평(※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잘된 점 ○ 미흡한 점 			항을 중심으로 작성)	

V

□ 정책별	개선	현황
○ 법령		

순번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 기본계획

순번 계획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Ⅱ. 정책개선 현황

		. ~
\bigcirc	7	ᆫ어
()	\sim	ᅡ띣

순번	사업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개선계획

	사례 1(사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
	□ 주요 내용
	0
	0
	□ 주요 정책 개선 내용
	0
	0
	0
Ш.	
정책 개선	
우수 사례	
	사례 2(사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
	/ 1 4 2 (/ 1 日 6 · ※ 日 6 <i>) 게 듹 , ' 1 日 6 / 1 / 1 1</i>
	□ 주요 내용
	0
	~ ~
	0
	□ 주요 정책 개선 내용
	0
	0
1	
	0
	0
	0
	0
	0
	0

 \coprod

💮 작성 요령

Ⅰ. 분석평가 추진현황(총괄)

-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 1. 전체
- 법령은 제·개정 법령 수,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수,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 기관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수,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 수 기재
- 2. 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별(원안동의, 개선의견) 분석평가 실시 건수를 기재하고, 반영결과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 수 기재

□ 총평

○ 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

Ⅱ. 정책 개선 현황

- □ 정책별 개선 현황
- 주요 개선실적은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중 개선의견에 대한 주요 반영실적과 자체 개선실적을 모두 기재
- 향후 개선계획은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중 개선의견 및 자체 분석평가 결과 도출한 개선안에 대해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Ⅲ. 정책 개선 우수 사례

- □ 주요 내용
- 기관별로 2~3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기재
- □ 주요 정책개선 내용
- 기관별로 2~3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정책 개선 내용 기재



 \prod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Π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법 제10조, 영 제5조)

가.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나. 대상 정책

-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

다. 대상 정책의 확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을 확정 ※ 부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참석

라. 특정평가 방법

○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IV

V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여성가족부>

<해당기관>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분석평가 실시

• 대상정책 통보 및 분석평가 실시



- 특정평가 대상정책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자료 제출 협조



결과 통보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
- * 정책개선 권고 가능

• **통**ら

-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 (개선대책 수립·시행)
-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
- *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특정평가 관리

• 특정평가 대상정책, 평가결과, 반영결과, 정책개선 등 종합 관리



통보

반영 결과 제출

-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정책개선 대책 수립·시행 결과 제출

나. 특정평가 방법: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II

정책 개선

가. 정책개선의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정책개선 권고내용과 조치기한을 포함하여 통보
-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의 결과와 정책개선 내용을 통보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 · 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다. 정책개선 결과 제출

○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개선 대책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IV

V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기관명, 부서명 1
대상기관	기관명, 부서명 2
	기관명, 부서명 3 ※ 대상기관 추가 가능
분석평가 기간	0000.00.00. ~ 0000.00.00.
분석평가의 필요성	
분석평가 주요결과	<i>※ 분석평가서 첨부 가능</i>
정책개선 권고	○ 권고사항 ○ 조치기한 : 년 월 일까지 ○ 권고사항
	○ 전보기 8 ○ 조치기한 :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 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 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075-0000)

0000 귀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결과					
관리	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 책 명					
		기관·부서명			
소관기관		부서장명/전화번호			
		담당자명/전화번호			
분석평가내용	분석평가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통보한 내용을 정리			
(요약)	정책개선 권고사항	※ 통보된 결과에 정책개선 권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분석평가 결과 반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내용을 해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기재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반영결과	그리 크게 ㅋ게 ス-리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정책개선 대책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행한 내용 (정책개선 권고 내용과 대응 필요)			

년 월 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2. 분석평가책임관
-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m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법 제13조)
-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과 소속으로 둒
- 2) 기능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심의·확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 및 영 제9조)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장관

○위 원

- 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행정안전부 제1차관·법제처 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5인 이내)
- 간사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2)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분석평가책임관(법 제14조, 영 제10조)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정현황 통보 양식

		분석평기	가 책임관	작성자			
기관명	직위	직급	성명	성별	소속과 (담당관)	성명	연락처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 법령·계획·사업 등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2조)

가. 평가기관의 기능

-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발 등
- 컨설팅 방향 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및 연계를 통한 전국 지원망 구축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석평가 지원
 -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평가 지원
 - 해당 지역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가기관의 운영

- 1) 실적·계획의 보고
 -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서를 <붙임 6>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2) 점검 및 지정 취소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지정기준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평가기관의 지정(법 제17조. 영 제12조)
-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4) 지정 대상
- 국·공립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소속 연구소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 평가기관 지정현황('11. 12. 현재)

지역	평가기관명	지정일
합계	9개 기관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 5.10
서울	서울여성가족재단	'10.11. 5
경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8. 5.10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 5.10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 1.15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9. 6. 1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 5.10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0.11. 5
광주	광주여성재단	'11. 9. 5

라. 평가기관의 지정(재지정)절차

<신청기관> <여성가족부> 지정 심사 지정 신청 •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 제출 신청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기관 업무 수행 지정서 교부 •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교부 •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기능 수행 재지정 신청 재지정 심사 • 지정기간(3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평가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평가기관 업무 수행 지정서 교부 •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교부 •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기능 수행

1) 지정 신청

-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1.2.3.4 참조)
 - 지정신청서 1부
 - 연구기관 설립근거 1부(설립 허가증 사본 등 제출, 별도 양식은 없음)
 - 연구기관 일반현황 1부
 -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실적 1부
 - 연구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 심사(여성가족부)

- 심의위원회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참여
- 심사 내용
 -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 여부를 확정
- 3) 평가기관 지정 통보
- 심사 결과 평가기관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사한 경우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교부
- 지정서 (※ 붙임 5 참조)

4) 재지정 신청

-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에 재지정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1.2.3.4 참조)
 - 재지정신청서
 - 연구기관 설립근거 1부
 - 연구기관 일반현황 1부
 -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실적 1부
 - 연구기관 운영계획서 1부
- 5) 재지정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신청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 결정
- 6) 재지정 통보: 심사결과 통지 및 지정서 교부

붙임 1.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재)지정 신청서(양식)

- 2. 연구기관 일반현황(양식)
- 3. 연구실적(양식)
- 4.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운영계획서(양식)
- 5.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지정서(양식)
- 6. 운영실적 및 계획서(양식)

붙임 1

중	중앙(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재)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기관명					
ેવે જે વે	주 소 (소 재 지)		(전화: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기관명)			국공립	국공립 연구기관()
	명 칭				정부출약	연 연구기	란 ()
지원기관					민간연	구기관	()
개 요	소 재 지		(전화			-)
	센터장 성명				(생년월일	일: .		.)
	센터종사자	센터장		명	센터직원			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연구기관 설립근거 사본 1부
- 2. 연구기관 일반현황 1부
- 3.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실적 1부
- 4.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계획서 1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붙임 2

		연구	기관	일반	현황			
1. 기 관 명				2. 대.	표자			
3. 설립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팩 스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Ó	일		
1								

8. 주요연혁(요약)

붙임 3

연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연구내용	발주처	

**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또는 성인지예산 연구실적을 기재

II

 \coprod

성별영향분석평

V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계획서

- 1. 목 적
- 2. 센터현황
- 인 원

구 분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연구경력
센터장				
센터직원				

- ※ 센터장과 센터직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예 산

사업명	예산액(천원)	
계		

○시 설

시설명	면적(평)	시설명	면적(평)
자료실		기 타	
상담실			

- 3. 운영계획(※별지사용 제출 가능)
- 분석평가계획
- 지원 및 자문계획

구 분 지원 및 자문방법		비 고

○ 연구계획 등

구 분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비고

V

붙임 5

제 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서

명 칭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ㅇㅇㅇ(대표자 :)

소 재 지:

기 관 명:

지정기간 : 20 . . . ~ 20 . . . (3년간)

위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함.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실적 및 계획서

1. 기관현황

○ 인 원

구 분	성 명	직 책	담당사무	비고
센터장				
직원				
작편 				

○ 예 산

연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 시 설

시 설 명	면적(m²)	시 설 명	면적(m²)
자료실		기 타	
상담실			

2. 운영실적 및 계획

○ 분석평가 실적

구	분	과제명	분석평가기관	평가내용	비고
실	적				
=	٦				
계	획				
711	9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실적 및 계획서

○ 컨설팅 실적

구분	분	컨설팅한 기관명	기 간	컨설팅 내용
실	적			
包	~			
계	힉			
4	퍽			

○ 모니터링 실적

구 분	모니터링한 기관명	기 간	모니터링 내용
실 적			
근 역			
계획			
/1 4			

※ 필요한 경우 칸을 늘릴 수 있음, 운영실적과 계획은 별지사용 제출 가능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가. 개요

-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관리함 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 사이트주소 : gia.mogef.go.kr
- 이용구분
 - 사용자 : 공무원(기관 담당, 업무 담당), 컨설턴트, 전문가 등
 - 운영자 : 여성가족부 운영자, 관리자

나. 기능

- 1) 분석평가
- 체크리스트를 통한 대상정책 선정
- 정책의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제출 및 성인지 예산서 첨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내용 제출
- 2) 컨설팅
- 분석평가 각 과정에서 컨설팅 요청 및 확인
- 3) 운영 지원
-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현황 관리
-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 관리

4) 분석평가의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서 컨설턴트 지정을 통한 컨설팅 관리
- 각 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홈페이지 관리
 - 평가기관 직원 중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알림마당, 공유게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5) 정보 공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및 우수사례 공개
- 게시판과 쪽지 기능 마련으로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확대
-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매뉴얼은 별도 배포 예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1조)

가.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 교육계획 수립 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교육수요 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소속 공무원
 - 횟수 : 연 1회 이상

나. 2012년도 교육과정(여성가족부 주관)

○ 담당자 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에서 교육 실시

교 육 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내용
사업	과제담당 공무원(중앙부처)	2.3(금), 2.10(금), 2.14(화)~2.17(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분석서 작성 실습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 공무원(지자체)	6원~X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분석서 작성 실습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담당 공무원	3월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분석서 작성 실습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담당 공무원	3월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분석서 작성 실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찾아가는 교육 : 9~11월 실시 예정

다. 내용

- 당해연도 분석평가 추진방향 및 지침 이해
- 분석평가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 이해
-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 정책·예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작성
- 사업유형별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등

라. 교육 관리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교육을 총괄하며, 매년 교육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적 제출양식

기관명	구 분	횟수(회) ·	인원(명)	
			대상인원	교육순인원
	합계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교육			

[※]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소속 직원이 참여한 경우

- ※ 자체교육: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등으로 실시한 교육(강사초빙, 내부강사 활용 가능)
- ※ 찾아가는교육: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 대상인원 :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소속 공무원
- ※ 교육순인원 :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인원(ex. 2회 실시한 교육에 총 100명이 참석하였는데 2회 교육에 모두 참석한 인원이 20명이라면 교육 횟수는 2회, 교육순인원은 80명)

마. 교육 이수 후 컨설팅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요청 가능

구 분	평가기관명	전화번호
중앙행정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189
	서울여성가족재단	02-810-502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51-330-3422
	광주여성재단	062-670-0523
지방자치단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31-220-3952
시경사시원제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31-260-380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42-820-0230
	전남여성플라자	061-260-7323
	경북여성정책개발원	053-817-6011



V

참고자료

- 1. 관계 법령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사례

관계 법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coprod

IV

침고지

법 률 시행령(안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 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조(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을 선정한다.

-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 는 개정안
- 2.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 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 3. 법률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4.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 서의 단위사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5.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정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선정 결과를 여성가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대상 정책 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실시를 위한 지침(이하 "분석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 2. 성별 수혜분석

Ι

H

법률	시행령(안)

-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 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 야 하다.
- 제3조(분석평가의 시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 상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분석평가를 실시 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 정에 준하여 당해기관 법제담당의 자치법규 안 심사 전에 실시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 따라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전년도 분석평가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당해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한다.
-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 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 제4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법 제8조에 따라 작성 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다.
 -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 2.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여성가족부 제5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분석평가

법 률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 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 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 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 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시행령(안)

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영항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 정책을 확정하고, 분 석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평가 업무의 일부 를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분석보고) 정부는 매년 분석평가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행령(안)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 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하 사항
 -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 부·법제처·국무총리실 및 부의안건과 관련 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민 간위원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된 다.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 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 위원과 제8 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 률	시행령(안)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 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을 분석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의한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교육 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소속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Ш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 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소속 연구소 2.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족부 장관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과 지역성별 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 에 대한 모니터링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 의 확보 수준
-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 ·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 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 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 여야 하다.

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046호, 2011.9.15>

부칙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 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

나.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항)

법 률	시행령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 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적극적 조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한다.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 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 다. ②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 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업무에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절차,대상정책 및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법 률 시행령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 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 관이 정한다.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률	시행령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1~4. 생략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 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 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 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④ 생략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성인지 예산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성인지 예산서	

법률시행령

10~14 생략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 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 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 ③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 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 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 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법 문 지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 인지 기급실산시"라 한다. ②성인지 기급실산시에는 집행실적, 성명등 효과분서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1
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IV	법 률	시행령	
②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IV			II
IV			
IV			Ш
V			1111
V			
			IV
			V
모자료			
・・・・・・・・・・・・・・・・・・・・・・・・・・・・・・・・・・・・・			고 자
			虚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다. 기정계경험(원원 조정)				
법 률	시행령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 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 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 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 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 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 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부 칙	부 칙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마. 통계법(관련 조항)

시행령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 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 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에 관한 사무
 - ②생략

-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 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 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 다.
 -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2. 지방자치단체
 -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 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 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시·군·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 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 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임 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 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II

Ш

IV

V 참고지 법 률 시행령 시행령

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 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 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 복지분야

사 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양성평등하게 적용 기준 변경(보건복지부,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가구를 인정하였다.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
 -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 등
 - 출가한 딸 등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 별도가구인정이란 같이 살고 있어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적용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별도가구 인정 범위를 남성에게도 확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 하였다.

- 모자가정에 대한 특례인정을 한부모 가 정으로 개선
- 출가한 딸 가구와 친정부모에게만 적용하던 별도가구 인정을 출가한 아들·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할 경우, 아들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이 40%이나, 출가한 딸의 경우 15%를 부과하여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반영 하였다.

※ 부양비 부과비율: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 <아들의 부양비 부과 비율 인하>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되는 아들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출가 한 딸과의 차등 수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

П

Ш

IV

V 참고자

사례

남성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 파견(경기도, 2008)

선벽영향평가를 하기 정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 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기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있다.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적인 경우가 많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오히려 노후에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회관 등의 여가시설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 (109.6명)은 OECD 국가 평균(60.4명)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08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자료) 특히 **남성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높았다.

※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십만명당 자살인원)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72.7	22.6
65~69세	90.1	29.0
70~74세	112.7	40.4
75~79세	144.8	61.4
80세 이상	213.8	92.7

(출처: KOSIS 사망원인통계, '09)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경기도는 마땅히 외로움을 하소연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특히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46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보건분야

사 례

여성암 검진기관 조건 완화(보건복지부, 2004)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우리나라의 2년간 유방암 조기 검진 수검율은 22.3%, 자궁경부암 41.8%로, 미국에서 1987년에 조사된 지난 3년간의 자궁 경부암 조기검진 수검률 88%와 비교할 때 매 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궁경부암 수검률은 농촌지역, 저학력, 저소득 계층일수록 현저하게 낮아지며,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율 면에서도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지율도 낮았다.

*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율

구분		여자
	초졸이하	57.8%
	중졸	66.4%
교육 수준	고졸	79.4%
	대졸이상	78.9%
	전체	68.0%
	100만원이하	59.8%
	100~200만원이하	71.4%
소득 수준	200~300만원이하	69.7%
	300만원 이상	78.0%
	전체	68.0%

(출처 : 국가 암관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04)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 기관 조건을 일반건강검진기관 조건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진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개별 인정토록 완화함으로써 여성검진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가는 유 방암 이동검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어 암 검진 취약지역에서도 손쉽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남성 포함) (울산 남구. 2010 → 2011)

질환별 수검자 보고양식에 남녀성별구분없었음 질환별 수검자 보고양식에 남녀성별 구분하여 골다공증검진에 남성을 고려하지 않음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 변경 골다공증 유병율, 골감소 유병율을 성별로 파악 하여 남성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남성의 골다공증 검징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성의 검사항목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높임

사례

성별 맞춤형 도민 건강검진(전라북도 2008)

전라북도는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 따라서 전북은 2008년도에 40~75세 미만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대상의 건강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기초검사, 간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남녀 모두에게 발병률이 높은 간암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질병 및 질환은 성별 관련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가 요구 된다.

저소득층 남성을 위하여 2차에 걸친 전립선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저소득층 건강 검진에 여성의 다발적 질환인 갑상선 기능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Ш

□ 경제활동·소득

사 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여성기업의 접근성 제고(중소기업청,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기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성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이지만, 구조개선 사업,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 등은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여성기업의 수혜율은 미미하다. ※ 여성기업의 구조개선사업 수혜비중은 5.5%에 불과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사업은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의 매출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기업이 지원받기 힘들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중소기업청은 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매업 등의 업종에는 지원되지 않는 구조개선사업의 비중은 축소하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여성친화적인 지식기반서비스 업 육성자금은 확대하였다.

*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자금 규모

구 분	'06년	'07년
구조개선사업	9,700억	8,850억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948억	1,000억

사 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경상북도 2011)

성볔영향평가를 하기 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 병역을 필한자를 우선한다 는 것은 여성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

제 3 장 임 용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 3. 병역을 필한 자

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채용과 관련한 우대 사항이 정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전제

제 3 장 임 용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 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09.6.25, 11.08.29>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u>직무관련 자격증소지자</u>

□ 의사결정분야

○ 사 례

국세청 조사 분야 여성 인력 활용 강화(국세청,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국세청의 경우 '07년 여성인력은 전체의 23.0% 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점차 신규 직원의 여성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세원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조사 분야의 경우 여성인력 배치율이 저조하였다. 특히 지방청 조사국 여성인력은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다.

※ 전체 조사 분야 여성인력 비율 : 15.5%('07)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국세청은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여성의 조사 분야 근무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 하고 2008년 2월 정기 인사이동 시 지방청 조 사국별 현원의 18%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였 다.

※ 지방청 조사국 여성인력 비율: 12.0%('07)→18.4%('08)

또한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비율을 높인 후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인력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로 사기 진작에 긍정적 (65.0%)이라고 평가했다.

IV

Ш

□ 교육·직업훈련분야

○ 사 례

여성 과학기술 홍보대사 위촉 확대(교육과학기술부, 2005)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홍보대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성 홍보대사는 2005년 기준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이는 인문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여학생의 현실과 여학생들은 여성 홍보대사의 강연을 들었을 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흥미가 늘었 다는 성별영항평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 홍보대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04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계열별 분포

성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남자	46.2%	41.2%	12.6%
여자	61.8%	10.7%	17.5%

(출처 :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5)

* 홍보대사 강연 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 증가 여부 설문조사

성별	남성 홍보대사		여성 홍보대사	
78°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2.60	.836	2.54	.887
여자	2.23	.777	2.57	.813

(출처 :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5)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천 방식의 홍보대사 위촉 방식의 취지는 좋으나, 저조한 여성 홍보대사 비율을 높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주 지역 및 전공 분야에 따른 적정한 여성 홍보대사 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홍보대사들로부터 동료를 추천받는 '동료 추천 제' 위촉 방식을 도입하여 여성 과학기술 홍보대사의 비율을 2006년 36.6%까지 상승시켰다.

여성 과학기술자의 활약이 여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으로 기대된다.

※ 2008년 11월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대한민국 우주에 서다! (1st Korean Astronaut)' DVD가 제작되 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됨

□ 안전분야

사례

여성친화 "경기 김포신도시"(경기도,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도시기능에 대한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의 혜택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 없는 김포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목동신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기존 신도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조명이 어두운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
-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운 공원
- 방범취약지역 CCTV 미설치 등
- 단차가 많은 도로 환경
-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부족
-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포장
- 공원 내 여성을 고려한 체육 공간 부족
- 남녀화장실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 미설치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이에 김포시는 여성건강 및 보건이 보장된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김포 신도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9월 승인하였다.

- 주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대한 **밝은 조명**및 CCTV 설치
-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연결된 보행로망
-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
-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및 수유실 설치
-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 가족 또는 여성을 고려한 체육공간 조성
- 생활권별 탁아시설 설치 등

사례

여성이 안전한 공원 "서울숲"(서울특별시,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서울 숲은 2003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완 공되었으며 현재는 문화, 생태 프로그램, 체육시 설, 테마공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공원 이용자의 성비는 주말의 경우 남성 53.7%, 여성 50.3%이며, 주중의 경우 남성 54.4%, 여성 45.6%였다. 주말, 주중 모두 여성의 이용률이 낮았으며, 모집단인 서울시민의성비 남성 49.7%, 여성 50.3%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서울 군 공원 이용률이 남성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또한 공원 접근성에서 남녀 모두 만족도가 낮았는데, 여성의 경우 버스노선 부족, 보행로 안전 위협 등에서, 남성의 경우 운전 중 공원 안내표시판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공원이용과 관련하여특수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안전문제혹은 범죄 불안이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공원 「여행공원 조성 계획」을 '09년 6월 수립하고 여성이 안전한 공 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 여성이 안전한 공원 조성 : 공원 내 3개소 CCTV를 추가 설치, 야간경비 인력 보강하여 24시간 경비 체제 운영, 취약시설 2개소 보안 경비 추가
-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개 버스노 선 서울 숲 경유 운행**
- 잔디개방 쉼터,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시설 확충
- 서울숲 문화캠프, 주말가족생태나들이 등 가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다수 운영

□ 해외사례

사례

Women and Tobacco(호주 빅토리이주, 2010)

- 여성에게 미치는 흡연 영향
- 이 암,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기관지역, 자연 유산, 자궁외 임신, 조산, 저체중아 출산, 조기폐경, 골다공증, 뇌졸중, 자궁경부암 유발
- 성별고려된 담배광고와 마케팅
- ㅇ 담배업계는 담배 여성구매자의 특성을 공략하여 광고와 마케팅함 담배에 대한 여성이 갖는 이미지는 지적인, 세련된, 식욕억제 패션소품, 자진촉진, 자유임
- 흡연과 관련된 요인
- 청소년 흡연, 또래집단의 압력(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 체중증가의 두려움, 소외계층, 젊은 엄마와 단독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및 기타 정신 질환, 폭력 및 외상, 형편없는 신체 건강, 원주민 상태, 동성애자
- 보건예방 및 중단전략
- 대안기준제시(캠페인: 금연가=건강한 젊 은 여성의 이미지), 친목, 운동, 임신여성 을 위한 프로그램(태아건강보호)

- 정책맥락(policy context)
- ㅇ 담배광고 금지, 흡연반대 캠페인,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가격 조정, 무 지포장(plan-packaging, 2012년 7월 세 계최초시행, 로고, 브랜드이미지, 컬러, 광 고문구 금지)

사례

자녀양육 여성을 고려한 마약퇴치 사업(오스트리아 빈,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는 마약퇴치 관련 치료 및 교육 사업에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여성 환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워 마약 치료에서 불리 하였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성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간 마약퇴치 관련 치료가 필요하나 어린 자녀가 있어 치료를 받기 힘들었던 여성을 위하여 양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시설에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 수용이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 보조지원사업도계획하였다.

사 례

남성의 당뇨병 검진 기회 확대(캐나다 보건국. 2004)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캐나다 보건국은 당뇨병의 경우 여성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 증세가 가벼운 상태로 발 견되지만, 남성은 중년이후 증세가 심각한 상 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은 출산전후 검진을 통하여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게 되지만, 남성은 병세가 지각된 이후 검진함에 따라 합병증이 수반된 중증의 상태에서 당뇨병을 발견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은 식이요법이나 가벼운 약물치료로 증세가 호전되는 반면 남성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졌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국가가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캐나다는 남성들도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조기 치료 효과와 함께 치료를 위한 국가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발 행 일 | 2012년 1월

발 행 인|김금래

발 행 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전 화 | TEL : 02)2075-4652~55

팩 스 | FAX : 02)2075-4787

홈페이지 |www.mogef.go.kr

인 쇄 처 |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